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성년 자녀·손자녀 장애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애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애 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5.~2021. 11. 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승인신청서”를 “승인신청서(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말하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규정된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3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공무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청구서”를 “청구서(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 중 “별표 3과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3호가목2) 중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로 한다.

제5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등의 유족이 법 제40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
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별표 3 제4급 제7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
족관절)”로 하고, 같은 표 제6급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7
급 제8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고, 같은 제7급 제12호 중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를 “극도의 흉터가”
로 하며, 같은 제7급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급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9급 제4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
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제9급 제5호
중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을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
며, 같은 제9급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급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급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제11급에 제12
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

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1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2.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2급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제12급 제5호 중 “쇄골·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를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로, 같은 호 및 제8호 중 “기형”을 각각 “변형”으로 하고, 같은 제12급 제10호 중 “둘째”를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로 하며, 같은 제12급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제12급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급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제13급 제11호 중 “둘째”를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로 하며, 같은 제13급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급 제1호를 삭제한다.

4.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14.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15.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6.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17.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3.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4.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4급 제4호 중 “팔”을 “두 팔”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고, 같은 제14급 제5호 중 “다리”를 “두 다리”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며, 같은 제14급 제9호 중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을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으로 하고, 같은 제14급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2.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u>승인신청서</u> 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 ----- ----- <u>승인신청서</u> <u>(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한다)</u> -----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u>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u>	① ----- ----- ----- ----- ----- ----- ----- <u>말한다. <단서 삭제></u> ----- ----- -----

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
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
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
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
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
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
다. <후단 신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공무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

<신 설>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

----- 청구서(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

----- 별표 3 -----

-----.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
법 제30조제1항 · 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
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
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
류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서류

1) (생략)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
진단서

나. (생략)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1) (현행과 같음)

2)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
서

나.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

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 ⑥ (생 략)	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등의 유족이 법 제40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 제3항 및 제4항----- ----- ----- -----.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4